

# 교권옹호기금 운영규정

1997. 7. 9. 제정  
2009. 7. 22. 개정  
2011. 11. 30. 개정  
2013. 11. 25. 개정  
2014. 11. 2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교권옹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8.)

1. “교권침해사건”이란 회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무형의 침해로 인해 권익이 훼손되거나 이 회가 다수 교원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 “교육당사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3. “소송”이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의 재원은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③ 당해년도 기금운영 수익금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도 말에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4조 (회계) 기금은 이 회 교권옹호기금회계로 한다.

제5조 (사업) 기금의 운영수익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 11. 28.)

1. 회원 및 이 회와 관련된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

조(이하 '소송비 보조'라 한다)

## 2. 기타 교권옹호사업

제6조 (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1. 이 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개정 2014. 11. 28.)

2.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개정 2014. 11. 28.)

3.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신설 2014. 11. 28.)

제6조의 2(배제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권옹호위원회의 별도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제7조 (소송비 및 소청심사청구 변호사 선임료 보조의 범위) ① 소송비 보조는 소송의 매 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4. 11. 28.)

② 소송비 보조는 선임 보수(報酬)에 대하여 보조한다. 다만,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③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는 심급 당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조는 100만원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1. 28.)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는 3회 이내로 하고 그 보조액의 합계는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와 이 회가 판단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8.)

⑤ 소송비 및 소청심사청구 변호사 선임료 보조는 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기타 금전·채권 청구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비를 보조하여 승소할 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소송대리인은 이 회 법률 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1. 28.)

제8조 (소송 및 행정절차 취하 등의 사전 동의) 소송비 보조를 지급받은 회원이 취하 또는 재판상의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급받은 소송비 보조금을 이 회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제9조 (소송비 보조 신청기간)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헌법재판소결정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제10조 (회원의 소송비 보조 청구절차) 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 내에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소송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개정 2014.11.28)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개정 2014.11.28)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신설 2014.11.28)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신설 2014.11.28)

②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 내에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행정절차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개정 2014.11.28)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개정 2014.11.28.)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신설 2014.11.28.)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신설 2014.11.28)

제11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추천) 이 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이 회의 회원증명서 1부

2. 소송비 보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사건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개정 2014. 11. 28.)
4.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 일체(신설 2014. 11. 28.)
5. 판결문 또는 결정문[행정청의 결정이 완료된 경우] 사본 1부(신설 2014. 11. 28.)
6. 기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참고 자료(개정 2014. 11. 28.)

제12조 (위원회 설치) 소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회에 ‘교권옹호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소송비 보조 여부 및 지급액을 심사·의결한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는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회장과 교권옹호위원장이 심사·결정하되 교권옹호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개정 2014. 11. 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1. 28.)

제14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교권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식 1호>(개정 2014. 11. 28.)

## 소송비 보조 추천서

소 속 :

직 · 성명 :

귀회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위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소송 또는 행정절차에 대한 소송비 보조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 행정절차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

### 1. 신청인

가. 성명 : 나. 연락처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 및 직위 :  
 마. 자택주소 :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비 보조를 신청하며 소송비 보조를 지급 받은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소송비 보조를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라도 한국교총의 동의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한국교총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 보조 금액을 사유발생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1.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p>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b>&lt;수집.이용 목적&gt;</b>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 등</p> <p><b>&lt;수집 항목&gt;</b>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자택주소</p> <p><b>&lt;보유.이용기간&gt;</b>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 접수후 동 사업 운영 종료시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v 표시).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b></p>	<p><b>&lt;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gt;</b> '교권침해사건 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심의 등</p> <p><b>&lt;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gt;</b>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자택주소</p> <p><b>&lt;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gt;</b>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 접수후 동 사업 운영 종료시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v 표시).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b></p>		<b>제공받는 자</b>
<b>제공받는 자</b>	<b>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b>		
<b>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서식 4호>(개정 2014.11.28.)

## 사건 요약서

1. 사건 발생일 :
2. 사건 구분

소송			행정절차
사건유형	당사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민사 <input type="checkbox"/> 형사 <input type="checkbox"/> 행정 <input type="checkbox"/> 헌법심판 <input type="checkbox"/>	원고 <input type="checkbox"/> 피고 <input type="checkbox"/>	( )	교원소청심사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3. 선임 변호사

변호사 성명	소 속	연락처	선임일자	선임료

4. 사건 요지 :

5.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보조한 금액 :
6. 교권옹호기금위원회에서 既 보조받은 금액(○○년 ○○월 ○○일) :
7. 참고 및 특기사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